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윤종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915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괄적검토	4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4
(2) 제정안의 구성	4
(3) 지역 의과대학 법안 발의 현황	5
2. 의과대학 설치 · 타법 우선 적용	6
3. 입학정원 범위 설정	9
4.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	10
(1) 예산지원	10
(2) 기금의 조성	12
(3)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13

5. 지역공공의료과정	15
6. 지역의사장학생 지원	16
7. 의무복무 · 의사 면허의 취소 요청 · 의무복무 실태 보고	20
※ 참고자료	25
1. 의과대학 설립 관련 규정	25
2. 4대 교육 여건 산정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27
3.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및 입학 정원	28
4.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및 모집인원 현황	2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종균 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16.
3. 회부연월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는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1.8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인구 대비 의대정원수는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전국 평균 0.59명, 경기도 0.09명)인 상황임. 또한 경기도 내 시군구 별로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해 성남의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데 반해 과천의 경우 0.71명으로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교 의대가 3곳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립대학교 의대는 단 한곳도 없어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필수·공공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경기도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필수·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경기도에 위치한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한경국립대학교의 장은 공공의과대학의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지역공공의료과정의 학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의무복무 중인 의사에 대하여 우선 채용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내 병원 개설 시 보조 또는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 기금의 조성, 국·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정원을 100명 내외로 하며, 의과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경기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가가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설치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금의 조성,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경기도에 의료인 양성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경기도민들에게 양질의 필수·공공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제정안의 구성

제정안은 본칙 17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됨.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본칙(17개 조문)	
제1조(목적)	제10조(의무복무)
제2조(설치)	제11조(의사 면허의 취소 요청 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3조(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
제5조(입학정원)	제14조(의무복무 의사 병원 개설 시 지원)
제6조(예산지원 등)	제15조(기금의 조성)
제7조(지역공공의료과정)	제16조(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8조(학비등의 지원)	제17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제9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 부칙(2개 조문)	
제1조(시행일)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3) 지역 의과대학 법안 발의 현황

지난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발의된 지역 의과대학 특별법안은 총 8건으로 다음과 같음.

< 21대국회 지역 의과대학 특별법안 >

의안번호	법안명	대표발의의원
2102624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 의원
211557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
2116729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소병철 의원
2117015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성일종 의원
2118300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김희재 의원
2123732	경상남도 내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최형두 의원

2124533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최영희 의원
2125447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최혜영 의원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제정안 외에도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¹⁾,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²⁾,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³⁾,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⁴⁾이 상정되어 있음.

2. 의과대학 설치·타법 우선 적용(안 제2조 및 제4조)

제정안은 한경국립대학교를 특정하여 의과대학의 설치와 입학정원 산정 등에 대해 규정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경기도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등교육법」 제18조, 제19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설치와 입학정원의 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입학자격·수업연한·교육과정·학위의 수여와 그 밖에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

1) 의안번호 제2200279호,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2) 의안번호 제2200474호,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3) 의안번호 제2201062호,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4) 의안번호 제2202120호,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법에 따를 때, 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나⁵⁾, 의과대학의 경우 「의료법」⁶⁾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수준으로 정원제한을 받는데, 2025학년도 기준 의과대학의 정원은 5,058명이고, 정원내 모집인원은 4,565명임.

법이 제정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과대학을 설립한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의과대학과는 달리 특별법으로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게 되고,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특별히 적용되는 정원과 의무복무 등의 규정을 두게 됨.

다만, 경기도의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두는 것은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 다수

5)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4조(교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추어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추어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현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것.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추어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6) 「의료법」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의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을 추진 중인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교육부는 특정 대학의 의과대학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제정은 특별법의 취지나 대학 간 형평에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지역/공공/필수분야의 의사부족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지역 및 입학정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기존 법률 및 규정에서 의대 설립 요건·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의대 설립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법 체계상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제정안이 2020.9.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1항에 제시된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항목에 반하며, 또한 3항의 대한의사협회가 문제 제기한 4대 정책 (의대 정원, 공공의대 신설 포함)의 협의체 논의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임.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의료인력이 집중되어 있고 수천 병상 이상의 대규모 대학병원 분원의 설립이 될 수도권에 의과대학이 설치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므로 발의를 반대함.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과천의 경우 천명당 활동의사수를 0.71명으로 산정했으나 경기도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편을 생각하면 근처 병원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유리하고, 이미 의사 수는 충분히 많아 의사 수를 늘리거나, 대학병원을 신설하는 것으로는 의료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임.

3. 입학정원 범위 설정(안 제3조)

제정안은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로 하여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5조(입학정원) 교육부장관은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정안에 따를 때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법으로 확보함으로써 경기도 지역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2024년 3월 20일,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이미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의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차의과대학교의 의과대학 정원이 각각 80명, 80명, 40명 증원되었음.⁷⁾ 따라서 별도의 법률을 통해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

7) 참고자료 4.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및 모집인원 현황

의 입학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수도권 의과대학의 정원을 제정안의 의도보다 더 많이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짐.

4.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안 제6조, 제15조, 제16조)

(1) 예산지원(안 제6조)

제정안은 국가가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6조(예산지원 등) ① 국가는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행하는 산업보건·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및 비용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에 대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⁸⁾, 제정안은 지원대상을 특정하여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음.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의동, 부속병원 등 건물
이 필요하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
은 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⁹⁾, 설립비용 외에도 운영비·연구

8)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

비 등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지원규정은 상당한 재정 소요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다른 의과대학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의과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신·증설 가능성, 설립 주체(국립, 사립) 및 설치 후보 지역·대학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이 통보된 이후 검토 가능한 사항이며, 경상남도 국립의과대학 설치를 전제로 하는 법률조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 역시 특정지역 의대 건립 및 예산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사례는 없으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정 학교·지자체에 한정하는 재정지원(시설 및 설비 조성, 운영, 학비 지원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의대 신설의 경우 대상 지역뿐 아니라 추가로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건립 재원, 교원 확보 등에 관한 기재부, 교육부 등 유관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른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별로 설립한다.

②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分院(分院)을 둘 수 있다.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건립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실시되고, 2029년부터 신입생이 입학하고 2034년에 의과대학 정원(600명)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을 전제할 때,

의과대학 설립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940억 6,400만원, 부속병원 건립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851억 6,300만원, 의과대학 운영에 2029년부터 2034년까지 756억 1,500만원이 소요되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비용은 2,548억 4,800만원이고 이를 대상기간으로 나눈 연평균 소요액은 283억 1,600만원으로 추계됨.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4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합 계
의과대학 설립	3,778	44,371	45,916	-	-	-	-	-	-	94,064
부속병원 설립	2,293	27,562	55,314	-	-	-	-	-	-	85,168
의과대학 운영	-	-	-	8,805	10,499	12,378	12,519	14,687	16,727	75,615
계	6,070	71,932	101,230	8,805	10,499	12,378	12,519	14,687	16,727	254,848

- 주: 1) 실제 공사 기간과 신입생 입학 연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연도는 변경될 수 있음
 2) 건물 건립 비용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녹색건축물인증 비용 등이 제외된 금액이며, 해당 금액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3) 부속병원 건립 비용은 국고지원율 25%만을 반영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4) 의과대학 운영 비용의 경우 실제 교직원 채용형태와 채용규모 등에 따라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5) 의과대학 기숙사가 건립·운영될 경우 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기금의 조성(안 제15조)

제정안은 경기도지사가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5조(기금의 조성) ① 경기도지사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기금의 조성은 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공공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그러나 제정안은 지원기금에 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한 세액 공제규정을 두고 있을 뿐, 조성된 기금의 구체적 용도 및 운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나, 위임규정이 부재함. 따라서 기금 조성을 규정한 타 법의 체계를 참고했을 때, 용도에 대한 규정을 하거나 혹은 용도에 대한 위임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안 제16조)

제정안은 국가와 경기도지사가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함.

제16조(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지사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양여는 소유권을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이 전해주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예외적인 경우¹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공유재산은 유상매각이 원칙인 점,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¹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 양여 특례를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¹²⁾에 따라 국가에게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가 가능하므로, 본 제정안에 별도의 특례를 두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5. 지역공공의료과정(안 제7조)

제정안은 한경국립대학교의 장이 공공의과대학 입학생을 선발할 때 일정한 비율을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입학시키도록 하고, 한경국립대학교의 장이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공공의료과정의 선발 방법과 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7조(지역공공의료과정) ① 한경국립대학교의 장은 공공의과대학의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공공의료 관련 과목,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지역공공의료과정(이하 “지역공공의료과정”이라 한다)의 학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

② 한경국립대학교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역공공의료과정의 선발 방법과 교육과정 및 운영, 특별전형 관련 해당 지역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경기도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인력 육성에도 목적이 있으므로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로, 공공의료 관련 과목과정과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할 학생들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조치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한경국립대학교의 장이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지역인재전형과 같은 방식의 전형을 수도권 소재 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임.¹³⁾

6. 지역의사장학생 지원(안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공공의과대학 설립 외 지원으로서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직무교육 제공 등 지원, 의무복무 의사의 병원개설 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제8조(학비등의 지원) ① 국가는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8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휴학, 성적기준의 미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1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에는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학비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퇴학한 사람

2.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0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그 밖에 반환금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경기도지사는 지역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복무 중인 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경기도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우선 채용하거나 의무복무가 이루어진 기관에 우선 채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복무 의사 병원개설 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의사가 경기도 내 병원 개원 시 보조 또는 용자를 하거나 간호사 등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 행정인력 고용 지원,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에 따를 때,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지역의사 선발전형 입학생은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간 의무복무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의학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지역공공의료 보완을 위해 의무복무

의사가 도내 병원을 개원할 때 이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인센티브로 보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보건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업이 정지된 경우 학비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의무복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복무 불이행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액에 법정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징수방식을 규정하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두는 것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학비반납과 관련하여 경찰대학이나 한국농수산대학의 경우에도 제정안과 그 요건이나 범위에는 일부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학비 반환 규정을 두고 있음.

< 학비 반납 관련 규정 현황 >

구 분	학비 반납 사유
사관학교	· 별도 규정 없음. - 다만, 입학과 동시 군적에 편입, 대부분 의무복무 이행 -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학이나 전학 금지
경찰대학	· 의무복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2항 제10조(의무복무)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 학업 중단 시 반납 의무는 없음(단,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금지)
한국 농수산대학	· 의무복무 불이행 및 중도 퇴학, 제적처분 받은 경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12조(학비지원과 조건 이행) ③ 법 제9조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망·신체장애·질병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교육부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위해 국가가 필요경비를 재정지원하고, 개인병원 개원을 지원하는 것은 비용부담주체(경기도 외 지역을 포함한 국가)와 수익자(경기도 지역 또는 경기도 지역

개원의)가 달라 지역 간 형평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지원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자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특정지역 의대 건립 및 예산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사례는 없으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정 학교·지자체에 한정하는 재정지원(시설 및 설비 조성, 운영, 학비 지원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임.

7. 의무복무·의사 면허의 취소 요청·의무복무 실태 보고(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정안은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제8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10년의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의무복무 대상자에 대한 면허 취소 요청, 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10조(의무복무) ① 제8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기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보건업무에 10년 동안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이하 이 조에서 “전문의를수련”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를수련을 받거나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전문의를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의수련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군보건의료인”,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한다.

제11조(의사 면허의 취소 요청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 면허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의무복무의 잔여기간 동안 의사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다.

제12조(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사의 의무복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해당 의사의 근무실적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기도지사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무복무 대상인 의사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의 장을 거쳐 경기도지사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정안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한경국립 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수업연수를 일반적인 의과대학과 같이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으로 총 6년¹⁴⁾으로 보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학비지원기간의 약 1.7배 수준임. 이는 학비지원기간 대비 의무복무기간을 1.5배~2.5배 사이로 규정한 사관학교(2.5배), 경찰대학(1.5배), 한국농수산대학(2배)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특히, 의업의 경우 수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졸업 후 사회에서의 취업기회가 많으며 소득이 높다는 점에서, 의무복무의사의 복무기간을 10년 정도 장기로 설정하여야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14)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한의학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운영한다.

< 의무복무기간 현황 >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 농수산대학
	육/해/ 공군	육군3	국군간호		
근거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 사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	한국 농수산대학 설치법
설치목적	군 장교 양성	육군 장교 양성	군 간호장교 양성	경찰간부 양성	농어업인력 양성
소관부처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경찰청	농림축산 식품부
대학 유형	대학	대학	대학	대학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	2년	4년	4년	3년
학위	학사학위	학사학위	간호 학사학위	학사학위 (법학/ 행정학)	전문 학사학위
졸업자 임용	졸업자 소위 임용	졸업자 소위 임용	간호사시험 합격자 소위 임용	졸업자 경위 임용	임용 × (의무복무)
의무복무 분야	각군 장교	육군 장교	국군 간호장교	경찰 간부	농어업분야
의무복무 기간	10년 (5년차 전역기 회)	6년	6년	6년	지원기간의 2배 (최대 6년)
	군인사법 §6②③ 및 §7①			법 §10①	법 §9①
병역기간 산입	○ (현역장교 복무)	○ (현역장교 복무)	○ (현역장교 복무)	○ (의무경찰대 대원)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 요원 복무기간 산입×)
	병역법 §5①			령 §23등 ¹⁵⁾	령 §12② ¹⁶⁾

교육부는 의사 면허는 의과대학 졸업 후 취득 가능하며, 학교 졸업 이후의 상황을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존에도 의사면허 부여 및 취소와 관련 교육부가 관여하는 바가 없으며, 해당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유소관 사항인 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의무복무 실태 보고 또한 교육부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

15)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②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1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2조(학비 지원과 조건 이행) ② 「병역법」 제38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한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과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1. 의과대학 설립 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함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교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현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것.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추는 것

<참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가. 병상 규모 : 허가 병상 수 100병상 이상

나. 연간 진료실적 : 퇴원환자 2,000명 이상

다. 병상 이용률 : 실제 운영 병상 수를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 이용

라. 시설 및 기구 : 간호과, 영양과, 약국, 의무기록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중앙공급실, 인턴당직시설, 분만실, 회복실 및 강의실(또는 회의실)을 갖추는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참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이상 8개과)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별로 설립한다.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2. 4대 교육 여건 산정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 교사(교사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 기준면적 [제4조제3항 관련]

계 열 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기준면적(m ²)	12	17	20	19	20

※ 전문대학은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교지 기준면적 [제5조제1항 관련]

학생 정원 (편제정원)	400명 이하	400명 초과~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면적(m ²)	교사건축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 교원 산출기준 [제6조제1항 관련]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1인당 학생수(명)	25	20	20	20	8

□ 수익용 기본재산 [제7조제1항 관련]

- 대학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 제외) 300억원
2. 전문대학 200억원
3. 대학원 100억원

3.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및 입학 정원

시도명	인구 천명당 의사수(2021)	학교수	정원	학교명(의예과 기준)
계	213(평균) (OECD 평균 3.6명)	40	3,058	
서울	3.37	8	826	서울대(135), 경희대(110), 고려대(106), 연세대(110) 중앙대(86), 이화여대(76), 한양대(110), 가톨릭대(93)
부산	2.45	4	343	부산대(125), 고신대(76), 인제대(93), 동아대(49)
대구	2.55	4	302	경북대(110), 계명대(76), 영남대(76), 대구가톨릭대(40)
인천	1.77	2	89	인하대(49), 가천대(40)
광주	2.54	2	250	전남대(125), 조선대(125)
대전	2.56	2	150	충남대(110), 을지의대(40)
울산	1.60	1	40	울산대(40)
경기	1.68	3	120	아주대(40), CHA의과대*(40), 성균관대(40)
강원	1.81	4	267	강원대(49), 한림대(76), 가톨릭관동대(49), 연세대원주(93)
충북	1.57	2	89	충북대(49), 건국대충주*(40)
충남	1.54	3	182	단국대천안(40), 순천향대(93), 건양대(49)
전북	2.06	2	235	전북대(142), 원광대(93)
전남	1.75	-	-	-
경북	1.38	1	49	동국대경주(49)
경남	1.71	1	76	경상대(76)
제주	1.77	1	40	제주대(40)
세종	1.23	-	-	-

4.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및 모집인원 현황

지역	대학명	2024학년도 정원	배정	2025학년도		
				정원 (A)	모집인원 (정원내) (B)	차이 (B-A)
수도권	서울	서울대		135	134	△1*
		경희대		110	110	0
		연세대		110	110	0
		한양대		110	110	0
		고려대		106	106	0
		가톨릭대		93	93	0
		중앙대		86	85	△1*
		이화여대		76	76	0
	서울	826	0	826	824	△2
	경기	성균관대	80	120	110	△10
		아주대	80	120	110	△10
		차의과대	40	80	80	0
	인천	인하대	71	120	120	0
		가천대	90	130	130	0
	경기·인천	209	361	570	550	△20
	수도권 소계	1,035	361	1,396	1,374	△22
비수도권	강원	강원대	83	132	91	△41
		연세대 분교	7	100	100	0
		한림대	24	100	100	0
		가톨릭관동대	51	100	100	0
	경북	동국대 분교	71	120	120	0
	대구	경북대	90	200	155	△45
		계명대	44	120	120	0
		영남대	44	120	100	△20
		대구가톨릭대	40	80	80	0
	경남	경상국립대	124	200	138	△62
	부산	부산대	75	200	163	△37
		인제대	7	100	100	0
		고신대	24	100	100	0
		동아대	51	100	100	0
	울산	울산대	80	120	110	△10
	전북	전북대	58	200	171	△29
		원광대	57	150	150	0
	광주	전남대	75	200	163	△37
		조선대	25	150	150	0
	제주	제주대	60	100	70	△30
	충남	순천향대	57	150	150	0
		단국대(천안)	80	120	80	△40
	충북	충북대	151	200	125	△75
		건국대 분교	60	100	100	0
	대전	충남대	90	200	155	△45
		건양대	51	100	100	0
		을지대	60	100	100	0
	비수도권 소계	2,023	1,639	3,662	3,191	△471
	합계	3,058	2,000	5,058	4,565	△493